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4. 18.(화) 11:00 < 4.19.(수) 조간 > 배포 2023. 4. 18.(화)

지구온난화 물질(HFC) 규제 시행

- 「오존층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안 4월 19일(수) 시행

- 「키갈리 개정서」에 따라 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(HFC) 감축 예정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「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(오존층보호법)」 시행령이 4.18.(화)에 공포되어 4.19.(수)부터 시행되며, 이에 따라 '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「오존층보호법 시행령」 개정 주요 내용

❶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(HFCs)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(오존층파괴물질)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

❷ 특정물질 제조·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

❸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(5%→3%) 등

HFC는 오존층파괴물질(HCFC)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「키갈리개정서」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. 이에 제2종 특정물질(HFCs)을 제조·수입하는 자는 '23년도 제조·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.19.(월)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 특정물질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업체 약 60개사 대상

또한, 정부는 「키갈리 개정서」상 감축목표*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* 감축 일정 : ('24)동결 (기준수량: '20~'22년 평균 소비량) → ('29)10%감축 → ('35)30%감축 → ('40)50%감축 → ('45)80%감축

담당 부서	산업정책실 화학산업팀	책임자	팀 장	강규형 (044-203-4930)
		담당자	주무관	유혜인 (044-203-493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